

---

#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

---

2021. 1.

# 목 차

## I 지원대상 관련

1.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..... 1
2. 소상공인 기준은 ..... 2
3.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지 ..... 4
4. 타 지원금을 중복 수령 가능한지 ..... 6
5. 새희망자금 수혜자 버팀목자금 지급 ..... 6
6.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인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함 ..... 6
7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 ..... 7
8.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..... 7
9. 외국인·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가능한지 ..... 7
10. 여러 사업체 동시 운영하는 경우 ..... 7
11.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지원 대상 증가 ..... 8
12. 새희망자금 지급받았으나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함 8

## II 자금신청 관련

13.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..... 8
14. 온라인 취약계층의 경우 ..... 9
15.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..... 9
16.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..... 9

17.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.....	10
18. 신청 시 준비서류 및 문의는 어디에 .....	10
19. 사업자번호 입력했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.....	11
20.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으나 지급대상자라고 함 .....	11
21.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한지 .....	11
22.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지 .....	12

### III 지원금액 관련

23. 편의점의 경우 매출액 산정 기준 변경 필요 .....	12
24. 편의점의 경우 점포별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.....	12
25. 집합금지업종인데 100만원만 지급되는데 .....	13

### IV 매출감소 판단 관련

26.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.....	13
27. '19년 매출은 없고 '20년 매출만 있는 경우 .....	13
28. '20년 11월 이후 개업한 경우 .....	13

# I

## 지원대상 관련

### 1.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?

-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,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

#### <버팀목자금 지원 요건>

구분	소상공인 여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집합금지업종	○	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)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	무관	300만원
영업제한업종	○		무관	200만원
일반업종	○	'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	○	100만원

\* '20.11.30.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(휴·폐업 제외)

\*\*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

#### <참고>

#### ①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

구분	사회적거리두기 2단계	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	연말연시특별방역
집합금지	유흥업소 5종 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·콜라텍), 홀덤편	유흥업소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홀덤편	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·빙상장·눈썰매장) 및 부대업체 (시설내 음식점, 편의점, 스포츠용품점 등 + 인근 스키대여점), 파티룸 [수도관] 밀폐형야외스키린골프장
영업제한	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, 학원, 교습소	식당·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(300㎡이상) 등	숙박시설

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(음식점의 경우 10억원)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다만,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
\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20.11.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#### ② 일반업종 : '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'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(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'19년 대비 '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)

※ ('20년 개업) '20. 9~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

## 2.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?

- (연매출액)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,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  - \* (자동차 제조업) 120억원 이하, (광업·운수업) 80억원 이하, (숙박·음식점업) 10억원 이하
- '19년 또는 '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, '20년에 개업한 경우 '20년 9~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(상시근로자) '20년 기준 일부 업종(제조업·광업·운수업·건설업)은 10인 미만, 음식·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
##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

###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 기준	근로자 수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120억원 이하	10인 미만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
15. 가구 제조업	C32		5인 미만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80억원 이하	10인 미만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정보통신업	J	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	E(E36 제외)	30억원 이하	5인 미만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억원 이하	10인 미만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5인 미만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### 3.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?

- 사행성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**용자제외 업종**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.
- 다만, 용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**유흥주점·콜라텍**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.
-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.

#### 관련 참고

#### □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<b>담배 도매업</b>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<b>약국, 한약국</b>
47859 중	<b>성인용품 판매점</b>
47911, 47912 중	<b>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</b>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<b>일반유흥주점업</b>
56212	<b>무도유흥주점업</b>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<b>부동산업</b>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 * 단, <b>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 가능</b> 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</b>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<b>보건업</b>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 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<b>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</b>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<b>복권 판매업</b>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<b>무도장 운영업</b>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▶ **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** 지원 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▶ **기타**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



#### 4. 중앙정부·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

- (중앙정부)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\*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.
  - \* 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
-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.
- (지자체)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

#### 5.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?

-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(일반업종)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.
- 다만, '20년 매출액이 '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\*이니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.
  - \* '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(21.2.25일)을 토대로 '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(21.3월중)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
  -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, 이번에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.

#### 6.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

-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인한 것입니다.
-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·숙박시설,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7.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\*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\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·학습지교사·방문교사 등

○ 다만,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.

## 8.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?

개인택시 사업자가 '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, '19년에 비해 '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○ 법인택시 운전자는 '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'(고용노동부)의 지원 대상입니다.

## 9. 외국인·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,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.

## 10.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,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?

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
○ 법인의 경우는 1개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점과 직영점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,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## 11.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·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?

-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, ② '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.
- ① 이·미용시설 추가, 음식점·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
- ② '20.6 ~ 11월 개업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

## 12.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

-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된 것입니다.
  -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\*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\* 지원금액,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
-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, 지자체에 집합금지·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II

## 자금신청 관련

### 13.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?

-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-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(공인)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(공인)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,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#### 14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?

-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,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(고령자, 시각장애인, 중증환자 등)은 가족, 직원,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\*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.

\* 새희망자금 신청시, 전통시장 상인들이 '시장 상인매니저' 도움 받은 사례 다수

#### 15.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.
-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#### 16.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? 문의는요?

- 1차 신속지급(1.11~) → 1차 확인지급(2월) → 2차 신속·확인지급(3월) 순서로 진행됩니다.

	지원 대상	지원 시기	공고 시기
1차 신속지급	11.24 이후 집합금지·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	1.11~	1.6.
1차 확인지급	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미성년자 등	2월 중	(향후 공고)
2차 신속·확인지급	'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*	3월 중	(향후 공고)

\* (집합금지·영업제한) 1차 지급 미수급자중 '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(일반업종)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'19년 연간매출 대비 '20년 연간매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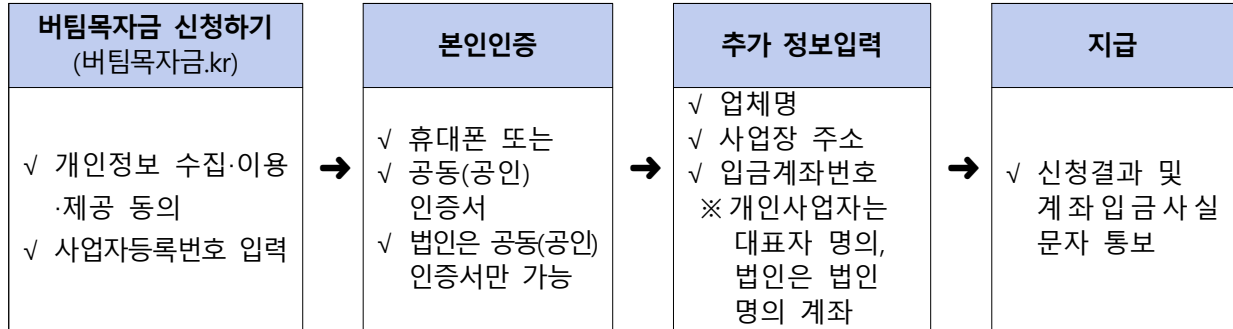
-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(버팀목자금.kr)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-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\* (온라인)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- [09시-20시 채팅상담] 이용  
(전화 문의) ☎ 1522-3500 (버팀목자금 콜센터, 09~18시 운영)

## 17.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
□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### < 온라인신청 절차 >



□ 1차 확인지급, 2차 신속·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.

## 18.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□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(버팀목자금.kr)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
□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### <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>

구 분		준비서류	비고
일반 업종	공동대표, 가족대리수령(미성년대표 등)	대리인 위임장	자금 신청 문자 사전 발송
	계좌압류 사업장 등	가족관계증명서류	
	비영리단체	사회적기업, 소비생활협동조합,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	
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② 지자체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 확인서</li> </ul>	

**19.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.**

-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,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
  - 1)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
  - 2)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

**20.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?**

-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,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.
-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-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.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.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*21.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?**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.
- 다만, 미성년대표자,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(2월)이 가능합니다.

## 22.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집합금지·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, 매출감소로 지원받은(일반업종)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.
-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·숙박시설,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'20년 부가세 신고(2월25일)에 따라 '19년 대비 '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  -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## III 지원금액 관련

### 23.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?

-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.
-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
### 24.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,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?

-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
-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,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·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.
  - \*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·교육·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

**25.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. 어떻게 된 건가요?**

-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.
-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.
- 집합금지·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(100, 200만원)을 지급합니다.

**IV 매출감소 판단 관련 (일반업종만 해당)**

**26.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('19년 이전 개업) '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'20년 연간매출액이 '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.
- ('20년 개업) '20년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'20년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.

구 분		기준 매출액	비교 매출액
'19년 이전 개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'20년 연간 매출액 * '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	'19년 연간 매출액
'20년 개업자		'20년 12월 매출액	'20년 9~11월 월평균 매출액

**27. '19년은 매출이 없고 '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?**

- '20년 매출이 '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,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**28. '20.11월에 개업했지만,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

-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

**29. 300㎡ 이상 종합소매점(마트, 백화점 등), 대형 목욕장(찜질방, 온천 등)이 영업제한 대상인 경우 입점 사업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?**

- 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된 경우 입점 사업체도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200만원을 지급합니다.
  - 다만, 입점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  - \*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시설도 집합금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

**30. 집합금지,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자체에서 중기부로 명단을 보냈는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?**

-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.
  - 지자체에서 보내온 추가명단을 1.15일까지 취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지자체에서 1.15일 넘어서 명단을 보내왔을 경우
  -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제출자료가 잘못된 경우
  - 소기업 매출액기준\*, 상시근로자 수 등에 의해 지원 대상이 안된 경우
    - \* 휴·폐업, 매출액 기준 초과, '19 또는 '20년 매출액 신고가 안된 경우 등
  - 공동대표, 비영리단체, 긴급지급대상 등의 사유로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
-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1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